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검토기간: 2023. 7. 10.(월)~2023. 7. 14.(금)

2.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죽전역에일린의뜰 아파트 내 의무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달서어린이집과 큰별 어린이집의 재계약 및 월배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 재계약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보육 교직원	운영자(원장)	위탁기간
달 서 어린이집	대명천로8길10 (성당동)	618m ² (지상3)	77 (56)	16	김순희	2018. 12. 1.~ 2023. 11. 30.
큰 별 어린이집	선원로23북길 16-10 (이곡동)	450m ² (지상3)	59 (38)	11	최경숙	2018. 12. 1.~ 2023. 11. 30.

○ 재위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보육 교직원	운영자(원장)	위탁기간
월 배 어린이집	상화로9길 102-10(진천동)	510m ² (지상2)	97 (85)	23	원영순	2018. 12. 1.~ 2023. 11. 30.

○ 신규위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비 고
죽전역에일린의 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죽전동 204-1 (죽전동)	411.48m ² (지상1)	81 (예정)	민간위탁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선정일로부터 5년간

- 달서어린이집: 2023. 12. 1.~2028. 11. 30.
- 큰별어린이집: 2023. 12. 1.~2028. 11. 30.
- 월배어린이집: 2023. 12. 1.~2028. 11. 30.
- 죽전역에일린의 뜰 아파트 내 어린이집: 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2개소와 재위탁 1개소, 그리고 신규 1개소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대명천로 8길 10(성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달서어린이집은 시설규모 지상 3층(연면적 618㎡), 평균 정원 77명, 보육교직원 16명으로 2020년 2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A등급, 2022년 11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학부모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선원로 23북길 16-10(이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큰별어린이집은 시설규모 지상3층(연면적 450㎡), 평균정원 59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2023년 2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A등급, 2022년 11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고, 12월 달서구청장상을 받았으며, 공원놀이 체험·이야기할머니 활동 등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관계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함양에 노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심사기준에 따라 재계약은 심사위원 합산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현수탁자와 하고,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상화로 9길 102-10(진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월배어린이집은 시설규모 지상2층(연면적 510㎡), 평균정원 97명, 보육교직원 23명으로 2018년 9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결과 A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달서구청장 표창, 2021년 11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표준교육과정 준수, 안전한 보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위탁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위탁체와 위·수탁계약 체결함.
- 2024년 2월 입주예정인 959세대의 죽전역에일린의 뜰은 2023년 5월 31일 입주예정자들의 동의의견이 제출되었고, 6월 23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거쳐 9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 간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한 후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임.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특수성 반영 등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등이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